

국내·외 여비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여행의 종류)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교육행사, 회의참석, 시찰 및 학교 행정상의 공무집행, 산학협력단 외부과제 연구수행 등

제3조 (공무여행의 승인) ① 공무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여행 초일 7일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교원 이외의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여행 초일 5일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인된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빙하는 관계 공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과 같은 여행의 기본교통운임과 숙박비, 식비, 일비 등과 같은 현지체재비용으로 한다.

② 대학행정상의 공무집행 여비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며,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산학협력단 외부과제 연구수행의 경우 별표 2-2와 같이 분류한다.

제5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정상적인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실제로 경과한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제6조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천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가 연장될 경우에는 이를 여행일수로 간주 계산한다.

제7조 (전임교직원 이외의 자를 대동할 때의 여비) 전임교직원 이외의 자를 여행에 대동할 경우에는 본 대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여비지급 범위 및 방법

국내·외 여비규정(5-2-3)

제8조 (교통운임의 범위 및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용의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실비교통운임의 지급)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운임 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여비의 범위) ① 체재여비는 숙박비, 식비, 일비, 교통비로 구분한다.

② 수로여행에 있어서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탁료(야식)등과 같이 따로 필요로 할 때에는 숙박의 횟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체재 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학술회의 및 학회 참석 여비는 매년 예산편성시 총장이 따로 한다.

② 각종 교육, 행사, 시찰 및 회의 참석시의 여비는 주최측의 세목별 여비부담 내역을 참조하여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학 행정상의 공무집행 국내여비의 지급은 별표 2-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④ 산학협력단 외부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별표 2-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외부과제 수주비에서 지급한다.

⑤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급제한) ① 학생활동 지도에 따르는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경비는 해당 예산비목에서 일정액을 지출할 수 있다.

② 고적답사, 지질조사, 공장견학 및 교외실습에 따르는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상과 같은 현장 교육시의 경비는 해당 예산비목에서 일정액을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특례)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규정 제12조의 지급제한에 관계없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비 정액 중 숙박비, 식비, 일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 차량에 의한 출장 시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삭제: 2015. 06. 01)

국내·외 여비규정(5-2-3)

제15조 (당일출장의 여비지급) 당일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 3 장 국 외 여 비

제16조 (국외여비) ① 학교의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 4-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가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07.11.19.).

② 산학협력단 외부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는 별표 4-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외부과제 수주비에서 지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중 여비의 정액은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4조)은 199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 제14조, 제15조, 별표 1~5)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 1, 별표 2)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별표 2, 별표 4)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내·외 여비규정(5-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0조, 제15조)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4조, 제15조)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0조, 제13조, 별표 1~5)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1조, 별표1, 별표2)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별표 1, 별표 2-1, 별표 2-2, 별표 4-1, 별표 4-2)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외 여비규정(5-2-3)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구 분	해 당 교 직 원
특 호	총 장
1 호	교무위원급
2 호	교 수, 참 여, 부 참 여
3 호	부 교 수, 참 사, 부 참 사
4 호	조 교 수, 주 사, 부 주 사, 기술직 6등급 이상
5 호	서 기, 부 서 기, 연구·산학교수, 기술직 7등급 이하

별표 2-1

공무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숙박비 (10야당)	식비 (1식당)	일비 (1일당)	교 통 운 임			
				철 도	선 박	항 공	자 동 차
특호	실비	22,000	66,000	정액	1등정액	정액	정액
1호		13,000	51,000	"	2등정액	"	"
2호		13,000	45,000	"	"	"	"
3호		13,000	39,000	"	"	"	"
4호		13,000	33,000	"	"	"	"
5호		13,000	24,000	"	"	"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철도운임의 정액은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로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항공운임의 경우 1호 이하는 최대 150,000원까지 지급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국내·외 여비규정(5-2-3)

별표 2-2

외부연구과제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체 재 비				교통운임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계	철도	버스	자가용	항공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80,000	45,000	30,000	155,000	정액	정액	우선순위 1. 철도운임 2. 버스운임	정액
연구원	60,000	30,000	20,000	110,000	정액	정액		정액
연구보조원	50,000	24,000	20,000	94,000	정액	정액		정액
증빙영수증	생략	생략	생략		왕복티켓		통행료 영수증	보딩패스 invoice

※ 연구원(연구교원 및 박사 후 연구원이상), 연구보조원(박사과정생 이하)

※ 교통운임 비용에 관하여 신청시 단가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별표 3 삭제 (2016.08.01.)

별표 4-1

공무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

구 분	등 급	숙 박 비	식 비	일 비
특호 해당자	가	234	133	133
	나	186	99	99
	다	141	72	72
	라	99	61	61
3호 해당자 이상	가	124	81	81
	나	90	59	59
	다	71	44	44
	라	60	37	37
4호 해당자 이하	가	100	67	67
	나	72	49	49
	다	56	37	37
	라	48	30	30

국내·외 여비규정(5-2-3)

별표 4-2

외부연구과제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

직급	등급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합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가	Economy Class	200	100	50	350
	나		150	90	50	290
	다		120	70	50	240
	라		100	60	50	210
연구원	가	Economy Class	166	107	40	313
	나		120	78	40	238
	다		90	58	40	188
	라		80	49	40	169
연구보조원	가	Economy Class	140	70	30	240
	나		95	60	30	185
	다		70	40	30	140
	라		62	30	30	122
증빙서류	학회Proceeding, 기타증빙서류(boarding 티켓, 항공료 invoice, 출입국관련여권 사본 등)					

1. 국가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등급	아시아·대양주	남·북 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 아프리카주
가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해당지역 없음
나	타이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파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국외여비 계산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고시환율(KEB 하나은행 기준, 해당 환율표 제출) 현찰 살 때 기준을 적용한다.

국내·외 여비규정(5-2-3)

별표 5

당일 출장 여비지급표

구분	대상지역	여비	비고
1	수도권	20,000원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은 출장비 없음
2	수도권 외	40,000원	기본교통운임(왕복교통비) 추가 지급